

# 교무행정

## 교원 및 보직자 책임 시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 및 보직자가 1주간에 담당할 시간 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시간)**

① 학교 전임 교원의 1주간 책임 시수는 12시간~20시간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이 12시간 이상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간강사 강의 시수로 지급한다. 또한 학생들의 강의 수강신청 저조 및 학교의 재무구조 악화나 학교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시수 교수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미달 시수)** 특별한 사유(개혁주의에 반하는 신학적성, 교수의 강의 능력 미달,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미달 시 등)로 인하여 책임 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초과 시수)** 교원의 주당 담당 시수가 책임 시간보다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주당 6시간 까지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주당 총 담당 시수가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책임 시간 산입)** 책임 시간의 산입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교수 연구년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일정 기간 연구에 전념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수 연구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임용 후 7년 이상 또는 직전 연구년 복귀 후 7년 이상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정년 퇴임까지의 잔여 근무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2. 직전 연구년 복귀 후 4년 이상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연구년 복귀 후 정년 퇴임까지의 잔여 근무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② 교무 위원은 재임기간 중 이 제도에서 제외되며, 교무위원을 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잔여 근무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최소 승진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기간)** ① 제2조 제1항의 1호의 연구년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②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연구년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연구년 기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근무 연수)** ① 첫 번째 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 연수는 우리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부임한 때부터 기산하고 두 번째부터 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 연수는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에서 복귀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6년 미만 재직한 교원이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의 계속 근무 연수는 두 번째 연구년을 위한 근무 연수와 6년에 미달하는 연수를 합산한다.

**제5조 (연구년 신청·허가)** ① 연구년 희망자는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년 신청서
2. 연구 계획서
3. 연구 기관 초청장(해당자에 한함)

② 연구년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연구년 파견 실적
2.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 3. 연구년 연구 계획서

**제6조** (연구년 교원수 제한) ① 연구년 교원수는 휴직 및 파견 교원을 포함하여 학교 교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임교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학과 또는 학부 전공별 전임 교원 수가 7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 8명이 상인 경우에는 2명에게 연구년을 허가한다. 다만,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학과 또는 학부 전공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연구년을 연기 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년 교원수는 파견 교원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파견 및 연구년 신청자가 허가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파견이 우선한다.

**제7조** (처우) ①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② 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재임용의 기준이 되는 재직 연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년 기간 중의 승진 및 재임용은 유보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보수는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2년 내에 연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물은 국내외 우수 학술지 또는 전문 학술서이어야 한다.

④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은 차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출 기간 이후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는 교원의 차기 연구년을 위한 근무수는 연구 실적물 제출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국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1과목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⑥ 연구년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기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 또는 의무 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경건 훈련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생들의 영성 개발을 위하여 재학 중에 실시하는 경건 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은 “경건 훈련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업무 관장)** 경건 훈련에 관한 업무는 교목실에서 이를 총괄하여 관장하되 중요사항은 예배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2장 예배 위원회

**제4조 (경건 훈련 운영 위원회)** 경건 훈련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건 훈련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교목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건 훈련에 관한 법규의 제정 및 개폐정에 관한 사항
2. 경건 훈련의 실시에 따른 중요 사항
3. 기타 경건 훈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제3장 경건 훈련 종류

**제7조 (경건 훈련의 종류)** 학교가 실시하는 경건 훈련은 다음과 같다.

1. 경건 예배 : 학기 중 주1회 이상 실시하며, 모든 학생과 교수는 참석하여야 한다.
2. 개강 수련회 : 매 학기 개강 시에 개강 수련회를 실시하며 모든 학생과 교수는 참석하여야 한다.
3. 기타 : 학교가 학생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실시하는 예배로 모든 학생과 교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4. 위의 경건예배에 참여 미달학생은 졸업Pass가 안되며 교수는 강의가 미배정될 수 있다.

**제8조 (규정의 확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제9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통과와 교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 생활 규정

## 제1장 학생증 및 신상 카드

- 제1조** (학생증 교부) 입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학생과로부터 학생증(도서 대출증, 채플 출석 카드)을 교부 받아야 하며, 휴학 시 학생증은 반납해야 한다.
- 제2조** (학생증 휴대) 학생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휴학 시 학생증은 반납해야 한다.
- 제3조** (학생증 분실)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학생과에 신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4조** (학생증 용도) 학생증은 학생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도서 대출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5조** (신상 카드 작성) 학생은 입학 시 반드시 자필로 신상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상 카드는 학생 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되므로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빠짐 없이 기록해야 한다.

## 제2장 지도 교수 · 단체 구성 · 자율 기구 · 단체 활동 등

- 제6조** (지도 교수 배정) 학생은 재학 중 배정된 지도 교수를 통해 학생 활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단체 구성)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목적 이외의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1. 학교가 인정한 자율 기구(관)
  2. 순수한 학술, 선교, 체육 및 취미 단체
  3. 기타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8조** (단체 구성 서류)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명, 취지 및 목적, 조직 등을 명기하여 회원 연명부, 회칙, 지도 교수 승낙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 (지도와 감독) 학생 자율 기구(원우회, 각종 동아리 등)의 활동은 학생과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승인) 학생 자율 기구 등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학생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에서 20인 이상이 집회를 할 경우 “집회 허가 신청서”를 집회 4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내 광고 및 인쇄물을 게시 또는 배포할 경우
3. 외부 인사를 학내에 초빙할 경우
4. 수업 이외의 단체 활동을 위해 교내 장소를 사용할 경우

**제11조 (인준)**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과에 신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원우회 등 학생 자치 기구의 조직 및 임원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기타 단체의 조직 및 임원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제12조 (결과 보고서)** 원우회장 등 학생 자치 기구의 장과 단체장은 매 학기 초에 활동 계획서(예산 포함)와 전학기 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율 경비

**제13조 (자율 경비)** 원우회 등 학생 자치 기구의 자율 경비는 학생과에서 관리하되 필요시 절차를 밟아 인출, 집행한다.

**제14조 (예산 집행)** 학생 자치 기구의 예산 집행은 정확하게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지출하고 사후에 학생과의 감사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4장 상, 벌

**제15조 (포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학생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교내외에서 선행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2. 자율 기구(관)의 임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3. 총회장, 동창회장, 이사장 등이 포상을 추천한 자
4. 기타 포상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6조 (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학생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마약 등을 복용한 자
2. 절도, 폭행, 풍기문란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3. 학교 시설을 무단 점거 또는 파괴하거나 비품을 무단 반출하는 자
4. 수업 진행을 불법으로 방해(시험 거부 포함)한 자
5. 시험 중 부정 행위(컨닝)를 한 자
6. 연구 과제물(논문 포함)을 표절한 자
7. 금전상의 문제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자
8. 교내외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9. 본 규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
10. 기타 학생 신분을 크게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교외 출강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임교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교외 출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교외 출강이라 함은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술이나 직무 훈련 등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교육을 담당함을 말한다.

**제3조 (허가)** 교외 출강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가 정하는 일정 기간 또는 그 출강의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허가 기준)** 교외 출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외 출강은 원칙적으로 주당 담당 시간 2강좌(4시간)를 초과하지 않을 때
2. 학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5조 (무단 출강자 조치)** 허가 없이 무단 교외 출강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은 중징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 논문 시행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재학 중 이수한 전공 과정에 대한 지식을 종합 정리하며 자주적 학문 연구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졸업 예정자에게 졸업 논문을 제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논문 제출 자격)** 논문 제출 자격은 졸업 요건(졸업 학점, 등록 회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 제3조 (논문 작성 계획서 제출)** 논문 작성 계획서는 마지막 학년 매학기 초에 학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제출 자격으로서 복학한 자는 복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논문 지도 교수 배정)** ① 전공 지도 교수를 해당 학기 마감 후 10일 이내에 균등하게 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논문 지도 교수 명단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 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논문 작성은 개인 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장 포함 3명으로 하며 박사과정은 5명으로 한다.
- 제5조 (논문 제출 시기)** ① 논문은 지정하는 규격 및 작성량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심사는 위원장과 위원의 심사 결과를 합산 평균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③ 논문 성적 제출(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은 해당 학기말 성적 제출과 동시에 제출한다.
- 제6조 (논문 심사 결과 조치)** ① 논문 심사에서 합격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졸업증서와 해당 학사 학위증을 수여한다.  
②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수료자로 인정한다.  
③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시기는 논문 제출 학기 졸업일로 한다.  
④ 통과 논문 제목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 제7조 (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2회에 한하여 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재 제출 기간은 첫 번째 심사에서 불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군 복부 기간은 제외한다.
- 제8조 (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해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